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3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8.2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.8.27.
- 다. 상정일자 :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3.9.3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의 택 청소행정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어문을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(안 제3조제1항)
- 2)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신설 (안 제3조의2제5항)

- 3) 국민권익위원회 ‘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
위원의 제척·회피·회피·해촉 규정 마련 (안 제3조의2제6항 및 제7항)
- 4)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어문 수정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관계 회피 규정을 신설하며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